

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09 ~ |
|----------|--------|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제출연월일 | 2009. 12. . |
| 제 출 자 | 거창군수 |

1. 개정이유

-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『지역 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』 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(「공연법」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시·군·구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,
-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, 관계기관 간 협조·조정 및 군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에 실무 위원회를 두도록 함.(안 제6조의2 신설).
- 실무위원회는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,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정리, 군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(「공연법」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포함)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함
-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됨
-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고, 관련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 하여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

나. 그 밖에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, 임기 등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게 정비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11조, 제12조
- 「공연법 시행령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2010년도 본예산 반영(980천원)

다. 합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그 밖에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(2) 입법예고 : 생략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규정은”을 “조례는”으로, “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”으로, “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”을 “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”으로, “재난관리”를 “안전관리”로 한다.

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.

제2조(중전의 제3조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”를 “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, “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”를 “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3조) 제4호 중 “군내 소재하는”을 “군을 관할하는”으로, “재난관리업무”를 “안전관리업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법령 및 조례”를 “다른 법령 또는 조례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올리는”으로 한다.

제3조(중전의 제2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부군수
 2. 거창경찰서장
 3. 거창교육청 교육장
 4. 거창소방서장
 5. 육군 제8962부대 6대대장
 6. 거창기상대장
 7. 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
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이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다만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
2.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5조제1항 중 “회무를 통할한다”를 “그 업무를 총괄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출석과”를 “출석으로 개의하고,”로 한다.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,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,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”로, “인정할 때에는”을 “인정하면”으로, “재난관리”를 “재난 및 안전관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위탁한”을 “의뢰받은”으로, “관계기관·단체 등에게”를 “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는”으로,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”로, “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”을 “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”으로, “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”를 “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”로 하여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·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 중 “비치하고”를 “갖춰 두고”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----- 안전관리-----.</p> |
| <p>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군내 소재하는</u>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<u>재난관리업무</u>의 협의·조정</p> <p>5. <u>법령 및 조례에</u> 의하여 <u>당해</u>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</p> <p>6. <u>기타</u> 위원회의 위원장이 <u>부의하는</u> 안전의 심의</p> | <p>제2조(기능)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--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군을 관할하는</u> ----- <u>안전관리업무</u>-----</p> <p>5. <u>다른 법령 또는 조례</u>----- <u>해당</u> -----</p> <p>6. <u>그 밖에</u> ----- <u>회의에</u> 올리는 -----</p> |
| <p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</p> | 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<p>1. 부군수</p> <p>2. 거창경찰서장</p> <p>3. 거창소방서장</p> <p>4. 육군 제8962부대 제6대대장</p> <p>5. 거창교육청 교육장</p> <p>6. 기획감사실장</p> <p>7. 행정과장</p> <p>8. 경제과장</p> <p>9. 주민생활지원과장</p> <p>10. 산림환경과장</p> <p>11. 건설과장</p> <p>12. 도시건축과장</p> <p>13. 재난관리과장</p> <p>14. 농업기술센터소장</p> <p>15. 보건소장</p> <p>16. 상하수도사업소장</p> <p>17.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장</p> <p>18. KT진주지사 거창지점장</p> <p>19. 한국전기안전공사 거창지사장</p> | <p>1. 부군수</p> <p>2. 거창경찰서장</p> <p>3. 거창교육청 교육장</p> <p>4. 거창소방서장</p> <p>5. 육군 제8962부대 6대대장</p> <p>6. 거창기상대장</p> <p>7. 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</p> |
| <p>② 위원장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</p> | <p>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이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.</p> |
| <p>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</p> | <p>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<p>제4조(임기)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통할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| <p>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.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.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<p>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 ----- ----- 그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<p>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.</p> | <p>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|
| <p>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| <p>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|
| <p>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| <p>③ ----- 출석으로 개의하고, ----- .</p> |
| <p>④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|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|
| | <p>제6조의2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,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<신설></p> <p>제8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①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·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게 연구·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</p> | <p>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</p> <p>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,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----- 인정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-----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-----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는 ----- 범위에서 -----.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제9조(관계기관의 협조요청)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<신설></p> | <p>제9조(관계기관의 협조요청)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--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-----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-----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·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 |
| <p>제10조(수당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| <p>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|
| <p>제11조(회의록의 비치)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, 장소, 출석위원과 관계인, 안건,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11조(회의록의 비치) ----- ----- <u>갖춰 두고</u>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| <p>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.</p> |

관 계 법 령

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

[시행 2009.7.1] [법률 제9299호, 2008.12.31, 일부개정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7.1.26, 2007.8.3, 2008.12.31>

1. "재난"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태풍·홍수·호우(호우)·강풍·풍랑·해일(해일)·대설·낙뢰·가뭄·지진·황사(황사)·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.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

다.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의료·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

2. "해외재난"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.

3. "재난관리"라 함은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4. "안전관리"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5. "재난관리책임기관"이라 함은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.

가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
나. 지방행정기관·공공기관·공공단체(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)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

제9조(중앙안전관리위원회) ①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,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·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중앙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이 된다.

③ 중앙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검토, 재난의 대비·대응·복구(이하 "수습"이라 한다)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·조정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협의·조정 등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협의·조정을 거친 재난의 수습은 중앙위원회의 협의·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.
<개정 2008.2.29>

④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위원 1인을 두되, 중앙위원회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, 조정위원회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된다.
<개정 2007.1.26, 2008.2.29>

⑤ 중앙위원회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⑥ 중앙위원회·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지역위원회) ①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,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소속하에 시·도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도위원회"라 한다)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소속하에 시·군·구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7.1.26>

② 시·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 시·도위원회 및 시·군·구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,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2조(지역위원회의 기능)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. <개정 2007.1.26>

1.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
2.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
3.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(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)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
4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
5.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

제14조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)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중앙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2.29>

②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"중앙본부장"이라 한다)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, 중앙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때에는 주무부처의 장소속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(이하 "수습본부"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수습본부를 둔다.

④ 중앙본부장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·단체의 임직원과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외재난이 발생한 국가에 파견할 수 있다.

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대책본부,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** ① 해당 관할구역안에서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는 시·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도대책본부"라 한다)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군·구대책본부"라 한다)를 각각 둘 수 있다. 다만, 당해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대책본부 또는 시·군·구대책본부(이하 "지역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- 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"지역본부장"이라 한다)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- ③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=> **(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)**

□ 「공연법」

[시행 2008.2.29] [법률 제8852호, 2008.2.29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1.12.31, 2002.1.26, 2006.9.27>

1. "공연"이라 함은 음악·무용·연극·연예·국악·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.
2. "선전물"이라 함은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에 의한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.
3. "공연자"라 함은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.
4. "공연장"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.
5. 삭제 <2001.12.31>
6. "연소자"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- 제11조(재해예방조치)**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·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12.31, 2006.9.27>
- ② 제1항의 규정은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1.12.31, 2006.9.27>
- ③ 기타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공연법 시행령」

[시행 2008.12.31] [대통령령 제21214호, 2008.12.31, 타법개정]

제9조(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)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연장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
2.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
3.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

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공연장 등록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,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적용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·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12.29>

[전문개정 2002.7.30]